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6
----------	-----

제출년월일 : 2016. 4.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대한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함.

나. 활동 지원근거(안 제3조)

- 재난구호 활동, 사회봉사 활동, 보건의료 활동, 안전교육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

다. 사업비 신청 및 정산(안 제4조)

- 사업 신청,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라. 표창(안 제5조)

-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12. 22 ~ 2016. 1. 12)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법제심사 : 일부분구 수정 반영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지역사회 복지증진 관련 활동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활동

제4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제3조(활동 지원)

- 군수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비 호
연락처	(033)330 - 2150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